

서울특별시

우100-74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www.metro.seoul.kr / 전화 (02)731-6156, 6556 / 전송 (02)731-6562
 처리부서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3층) / 담당관 박진창 법제담당사무관 서성만 담당 이순재(soorjae@metro.seoul.kr)

문서번호 법무11110- 947
 시행일자 2000. 8. 4. ()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보존기간	시 장		
공개여부	25/23		
기타사항			
법무담당관	박진창		
◎법제담당사무관 <i>MM</i>			
기안자	이순재		협조
심사자		심사일	

(인사상안및고충처리)

결재: 248
 2000. 8. 4
 시법제담당관

제목 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2000. 8. 5 (토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9호

- 붙임 : 1. 발령목록 1부.
 2. 발령안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 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2000. 8. 5 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9호

- 붙임 : 1. 발령목록 1부.
2. 발령안 각2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인사행정과장

제목 : 예규 발령 통보 (인사상관및고충처리)

1.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2000. 8. 5 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79호

- 붙임 : 발령목록 각1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인사실장

(연사삼판및고층처리)

서울특별시고층심사처리규정 폐지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00년 8 월 5 일

서울특별시 장 고



(인사상담및고충처리)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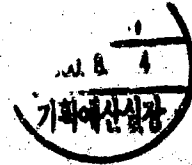
공무원은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제정되었으나,

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법령으로 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처리업무를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,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

서울특별시예규 제679호

(인사담당부서고충처리)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 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
기획예산실장

서울특별시

우100-744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(www.metro.seoul.kr)/전화(02)731-6623/전송(02)731-6053
 인사행정과(시청 본관 4층) 과장 이상설/후생복지팀장 김선순/담당 정연성(kindneas@mail.metro.seoul.kr)

문서번호 인사12169-2386

시행일자 2000. 7. 24.

공개여부 (공개)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설립	법무담당관	부속	지시	
접수	일자	2000. 07. 24.	결재	법제담당사무관 김승호
	번호	8566	재	행정심판담당사무관 김기원
처리과			공	수무담당사무관 김기원
담당자	이순재		람	행정심사담당사무관 김기원
심사자			심사일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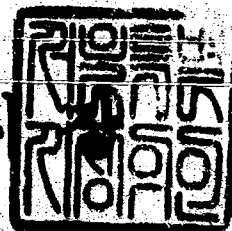
제목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 폐지발령 의뢰

(인사행정과에서)

1. 우리시에서는 직원의 각종 근무조건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을 제정, 운영해왔으나
2.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법령으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,
3. 동 규정의 폐지발령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 폐지규정안 1 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(인사상담및고충처리)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공무원은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제정되었으나,

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법령으로 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처리업무를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,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(인사담당및고충처리)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 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인사상담 및 고충처리)

서울특별시고충심사처리규정폐지규정안

이/심사	2010. 7. 22	제 3 호
담당자	인사상담담당관	법무담당관
승인	조복연	김승범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공무원은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제정되었으나,

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법령으로 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처리업무를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,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임용권자별로 소속직원의 고충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